

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. 12. 15 선고 2021가단1273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]

전 문

원 고 A단체

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12. 15.

주 문

1. 피고는 소외 D(주민등록번호 1 생략)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7. 5. 18. 접수 제6244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 판결)

판사 강명중

별지